

정 관

사단법인 한국건설안전학회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Safety

한국건설안전학회 정관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Safety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학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한국건설안전학회"(이하 '본 학회'라 칭함)라 하며, 영문으로는 "Korea Institute of Construction Safety(약칭은 "KICS"라 한다)"라 한다.

제2조(목적) 우리 학회는 건설사업의 생애주기에 걸쳐 안전, 보건, 환경 및 품질 분야의 학문과 기술의 통합적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안전한 건설사업의 수행을 통한 시민의 행복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1. 학회의 주사무소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114가길 11-1, 301호 (영등포동1가, 방재센터빌딩)에 둔다.
2. 본 학회는 필요한 곳에 지부를 설치할 수 있다.

제4조(사업)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비영리법인의 본질에 부합하는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건설안전 연구 및 조사
2. 건설안전 학회지, 기술지, 논문집, 전문서적 등 도서 발간
3. 건설안전 학술대회, 강연회, 강습회, 전시회 등의 개최
4. 건설안전 교육, 지도 및 평가 사업
5. 건설안전 견학 및 시찰
6. 건설안전 관련 기준의 연구
7. 건설안전 정책에 대한 조사, 연구, 자문 및 건의
8. 건설안전에 대한 국제 교류
9. 건설안전 공로 표창 및 장학 사업
10.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의 구분 및 자격) ① 본 학회는 회원은 제2조의 목적과 설립취지에 찬동하여 소정의 가입 절차를 마친 자로 정회원, 학생회원, 명예회원, 특별회원 및 단체회원으로 하며,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정회원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한다.

1. 건설산업 또는 안전분야 종사자
2. 안전, 보건, 환경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또는 안전분야의 기술개발과 그 응용에 대한 공적이 있는 자
3. 건설 또는 안전 관련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자
4. 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사람

③ 학생회원: 학부과정에 재학 중인 사람으로서 본 학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는 사람. 학생회원은 입회 후 그 자격이 일반회원의 자격기준을 만족시킬 때 일반회원으로 전환야 한다. 학생회원은 본 학회의 제반 의결권을 가지지 않는다.

④ 명예회원: 본 학회에 탁월한 기여를 한 자로서 학회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의 의결로 추

대된다. 명예회원은 회원이 갖는 모든 권리를 가지며 입회비 및 회비를 면제받는다.

- ⑤ 특별회원: 본 학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며 학회 발전에 크게 기여한 단체나 개인
- ⑥ 단체회원: 본 학회의 목적과 취지에 찬동하며 건설산업과 안전보건 관련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

제6조(회원의 권리) ① 회원은 학회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학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② 회원은 학회의 자료 및 출판물을 제공받으며, 학회운영에 관한 자료를 열람할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의 의무를 진다.

- 1. 본회의 정관 및 제규정의 준수
- 2.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 이행
- 3. 회비 및 제부담금의 납부

제8조(회원의 탈퇴 제명) ① 회원은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탈퇴서를 제출함으로써 자유롭게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학회의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였거나 본 학회의 목적과 취지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2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총회의 의결 또는 이사회의 결을 거쳐 제명할 수 있다.

③ 탈퇴 및 제명으로 인하여 회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납부한 회비 등에 대한 권리를 요구할 수 없다.

제9조(자격정지 및 복권) ① 학회의 회원으로서 회비를 2년 이상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② 제1항에 따라 회원자격이 정지된 자는 체납 회비를 모두 납부할 경우 회원 자격이 회복된다.

③ 장기 해외 장기출장, 유학 등 특별한 사유로 연회비 불입이 곤란한 회원에 대하여서는 연회비 불입을 유예할 수 있으며, 이 유예기간에는 회원자격이 정지된다

제3장 임원 및 사무국

제10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우리 학회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 1. 회장: 1명
- 2. 부회장: 15명 이내
- 3. 감사: 2명
- 4. 이사: 회장, 부회장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60명 이내

제11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결원으로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 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 중 생긴 때에는 보선으로 충원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이 정관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임원의 결격사유) 다음 결원이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4.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임원이 임기중 궐위된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할 수 있으며,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3조(임원의 선출방법 및 시기) ① 학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회장은 이사 중에서 호선하고, 부회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임한다.

③ 임기가 만료된 임원은 임기만료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원이 궐위된 경우에는 궐위된 날로부터 2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④ 임원선출이 있을 때에는 임원선출이 있는 날로부터 3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등기를 필한 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4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본학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 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본회의 업무를 방해하는 행위

제15조(임원의 직무) 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를 주재 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본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고문은 본 학회 주요 업무에 관하여 회장의 자문에 응한다.

④ 임원의 직제 및 직무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에서 정한다.

제16조(임원의 직무대행자 등) 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수석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회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이사회 의결을 받아 수석부회장이 회장직을 승계하되, 이 경우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② 수석부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또는 궐위된 경우에는 부회장이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학회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정관 및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학회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내지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총회, 이사회 및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제3호의 임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회장에게 이사회 의결을 요구하는 일
5. 학회의 재산상황 또는 학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에게 또는 이사회와 총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8조(명예회장 및 고문) 회장은 학회의 발전을 위하여 회장단의 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자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추대할 수 있다.

1. 명예회장: 직전 회장을 포함한 약간 명
2. 고문: 학회 발전에 현저하게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사람 중 약간 명

제19조(지회 및 위원회) 회장은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지회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0조(사무국) ① 학회의 회무처리를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하고 유급직원을 둘 수 있다.
② 사무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장 총회

제21조(총회의 구성) 총회는 본 학회의 최고의결기관이며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제22조(총회의 구분과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며, 회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총회의 소집은 회장이 회의안건, 일시, 장소 등을 명기하여 회의 개시 7일 전까지 문서로 각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정기총회는 매 회계연도 개시 1월 전까지 소집하여, 임시총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제23조(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임원의 인준 및 해임
3. 결산 및 예산의 승인
4. 사업계획의 승인
5. 그 밖의 중요사항

제24조(총회 정족수) ① 총회는 정회원 1/4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과부동수의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② 회원의 의결권은 총회에 참석하는 다른 회원에게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장은 총회 개시 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5조(총회 소집의 특례) 회장은 정회원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집 요구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제26조(총회 의결제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해임의결에 있어서 자신이 관계된 자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가 수반되는 사항의 의결에 있어 학회와 자신의 이해가 상반되는 자

제5장 이사회

제27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28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학회 운영에 관한 사항
2. 총회에 부의할 정관 변경 및 부회장, 감사의 선출에 관한 사항
3. 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 회비의 책정 및 징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승인, 제명, 징계와 포상에 관한 사항

6. 회원의 의무 및 권리에 관한 사항
7. 정관에 의해 위임받은 사항
8.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9. 그 밖의 중요한 사항

제29조(이사회 소집) ① 회장은 연 2회 이상 정기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임시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임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② 제1항의 이사회를 소집하는 경우 회장은 회의 7일 전까지 모든 임원에게 회의 안건을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 (전자우편, 홈페이지 공지 등 포함)으로 통지하여 이를 소집한다.

③ 회의 전 위임장을 제출한 자도 출석으로 간주한다.

제30조(이사회 의 정족수 등) ① 이사회는 제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 ② 회의 전 위임장을 제출한 자도 출석으로 간주하며 위임받은 자의 의사에 따른다.
-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는 있으나, 의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 ④ 심의 또는 의결사항 중 경미한 의결사항은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제6장 자산 및 회계

제31조(재정) 학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1. 회원(개인/단체)의 회비(논문회비 및 일반회비)
2. 찬조금 또는 지원금
3. 사업에 부수되는 수익
4. 자산에서 생기는 수익
5. 그 밖의 수익

제32조(회계년도)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3조(예산 및 결산) ① 회장은 매년도의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와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사업계획 및 수입·지출예산서는 매 회계연도 시작 전에 수립하고, 사업실적 및 수입·지출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제2항의 이사회 의결 결과를 매 회계연도 시작 후 2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총회에서 승인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도 변경된 사항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한다.

④ 부득이한 사유로 회계연도 시작 전에 예산안이 의결되지 못한 때에는 학회 시설의 유지 운영, 전년도 예산으로 승인된 계속사업의 시행, 사무국 직원의 급여, 그 밖의 학회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서 집행된 예산은 해당 연도의 예산이 성립되면 그 성립된 예산에 의해 집행된 것으로 본다.

제34조(예산 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 외의 채무부담이나 권한의 포기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정관 변경과 해산

제35조(정관 변경) 본학회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한다.

제37조(준용 규정)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국토교통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38조(해산) ① 학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재적 정회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해산할 수 있다.

② 학회의 해산한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유사법인에 기증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서 도달후 법원에 등기를 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정관 시행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자의 기명날인) 본학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발기인 전원이 기명날인한다.

2017 년 8 월 17 일

사단법인 한국건설안전학회

발 기 인

연번	서 명	생년월일	주 소	약 력	기명 날인
1	안홍섭	1957. 6. 9	전북 군산시 용둔길 12 107동 302호 (미룡동,금광베네스타)	군산대학교 교수	
2	김만기	1956.6.2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양현로166번길 20, 906동 1102호(이매동,이매촌)	경기대학교 교수	
3	김만장	1959.10.11	서울시 강동구 고덕로 131, 117동801호 (암사동,강동롯데캐슬퍼스트아파트)	한국건설안전 기술사회 원장	
4	박구병	1957.3.4	서울시 동작구 상도로53길 8, 312동 703호 (상도동,래미안상도3차아파트)	한국시설안전 공단 본부장	
5	장덕배	1958.5.21	서울 송파구 오금로32길 14, 110동 2002호 (송파동,삼성래미안아파트)	동양대학교 교수	

6	허 옥	1960. 2.18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중앙공원로 54, 218동 509호 (서현동,우성아파트)	임원협의회 회장(대림산업)	
7	기성호	1967. 8.20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동백2로 37, 4104동 1704호 (중동,어은목마을대원카타빌)	서울시 도시기반 시설본부 팀장	
8	김영동	1954.10.9	서울시 구로구 오리로1265길 2동 208호 (궁동,우신빌라)	경동엔지니 어링 전무	
9	전병호	1956.12.18	서울시 강남구 도산대로96길 39, 101동 902호 (청담동,삼성청담공원아파트)	한국건설안전 기술 부사장	
10	조성열	1968.2.9	서울시 도봉구 마들로 646, 102동 1603호 (방학동,방학동삼성레미안아파트)	GS건설 부장	
11	최순주	1954.5.30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소사로 78번길 81, 105동 1401호 (소사본동,삼성아파트)	한국건설안전 협회 교수	
12	최용호	1955.2.4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동편로183번길 51, 4층 401호 (관양동)	합동안전 대표	
13	이정석	1965. 3.20	인천광역시 부평구 원적로 344, 107동 201호 (산곡동,금호이수마운트밸리)	연구소장 (재) 한국비계기술원	
14	주진규	1958. 4. 4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한천로58길 47, 102동 1602호 (이문동,쌍용아파트)	경기대 교수	
15	최수환	1971. 7.11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초지1로 78, 2010동 1502호(초지동,행복한마을아파트)	GS건설 안전관리담당자	
16	하행봉	1963. 5.9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매실로 70, 110동 2004호 (호매실동,호매실GS아파트)	산업안전관리 대표	